## 아청법상 아동음란물 정의의 변천사

" 한국 표현의 자유 현주소" 컨퍼런스 제3세션

김가연 변호사 사단법인 오픈넷

## "아동.청소년이용음란물"의 정의

### 아동.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

아동·청소년 또는 아동·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 행위, 유사 성교 행위,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·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, 자위 행위 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·비디오물·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·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

### 형량비교

#### 강간(형법 제297조)

• 3년 이상의 유기징역

#### 아동·청소년 강간(제7조 제1항)

•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

#### 아동·청소년 매매(제12조)

•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

#### 음화제조 등(형법 제244조)

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

#### 아동음란물 제작 등(제11조 제1항)

•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

#### 아동·청소년 대상 성범죄자

• 30년-10년 신상정보 공개 및 최대 10년 취업제한

## 형량비교

#### 음화반포 등(형법 제243조)

- 음란한 문서, 도화,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,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 시 또는 상영한 자
-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

#### 벌칙(정보통신망법 제74조)

-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• 판매 • 임대하거나 공공 연하게 전시한 자
-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

#### 영리 목적 아동음란물 배포 등(제11조 제2항)

• 10년 이하의 징역

#### 아동음란물 배포 등(제11조 제3항)

•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

#### 아동·청소년 대상 성범죄자

• 30년-10년 신상정보 공개 및 최대 10년 취업제한

## 형량비교

#### 음화제조 등(형법 제244조)

- 음화반포 등의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제조, 소지, 수입 또는 수출한 자
-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
- 음란물 단순 소지 처벌 X

#### 영리 목적 아동음란물 소지(제11조 제2항)

• 10년 이하의 징역

#### 알면서 아동음란물 소지(제11조 제5항)

•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

#### 아동·청소년 대상 성범죄자

• 30년-10년 신상정보 공개 및 최대 10년 취업제한

### 2011년 아동음란물 정의 개정

### 2011년 개정 이전:

<u>아동ㆍ청소년</u>이 등장하여…

### 2011년 9월 15일 개정이후:

<u>아동·청소년 또는 아동·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</u> 표현물이 등장하여…

### 2011년 아동음란물 정의 개정

- 2011년 "아동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 또는 사람"을 포함시켜 정의 확대
- •실제 아동 보호를 위해 엄중히 적용되던 모든 규제가 만화 등 가상 아동음란물에도 똑같이 적용됨
- 아동성범죄자로 신상등록 및 취업제한 적용
- •음란성이 없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적용됨: "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 • 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 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"

## 2011년 아동음란물 정의 개정의 효과(?)

• 2011년 아동음란물 관련 사건 22배 증가!

연도	접수	기소	불기소	기타
2010	82	38	26	14
2011	100	58	23	21
2012	2,224	775	433	940

※ 정보공개센터 대검찰청 정보공개청구 결과



### 2012년 아동음란물 정의 재개정

### 2011년 개정:

아동·청소년 또는 <u>아동·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</u>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…

### 2012년 개정:

아동·청소년 또는 <u>아동·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</u>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…

### 사법부의 대응

- 2013년 5월 성인 교복물 위헌제청(의정부)
- 2013년 6월 성인 교복물 위헌취지 무죄(안산지법)
- 2013년 8월 일본작품 블랙바이블 위헌제청(수원지법)
- •2014년 9월 대법원 1,2,3부 성인 교복물 무죄("여성이 명백히 아동청소년으로 보이지 않아")
- 2014년 9월 애니메이션 위헌취지 무죄(수원지법 성남지원)



## 2015년 언재 압언 결정

- 2015년 6월 25일 헌법재판소는 아청법 제2조 제5호에 대해 합헌 결정(합헌 5, 위헌 4)
  - (1)성인 교복물 사건에서 "죄형법정주의 위반, 표현의 자유, 청소년의 성적결 정권의 침해 및 청소년 전과자가 양산될 수 있다는 이유로 서울북부지법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사건(2013헌가17),
  - (2) 만화 사건에서 "만화를 실제 아동이 등장하는 음란물과 똑같이 취급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, 과잉금지 원칙에 반한다"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(2013헌가24) 등
- 합헌 의견: '아동·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'은 <u>실제로 이처 럼 오인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사람이 등장하는 경우</u>를 의미한다는 전제 하에 <u>아청법의 적용범위는 아동·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</u> 죄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수준의 것에 한정



### 2019년 CRC OPSC 지침

- 2019년 9월 UN 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권리협약(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, CRC) '아동매매, 아동성매매, 아동음란물에 관한 선택의정서(OPSC)'에 대한 지침을 발표
- 지침은 선택의정서상 아동음란물의 범위를 실존하지 않는 아동이나 아동으로 보이는 사람이 등장하는 표현물로 확대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
- •오픈넷은 지침에 대해 UN 아동권리위원회와 UN 아동매매 및 성착취 특별보고관에게 한국의 사례를 알리는 의견서를 제출



### 아동형상리얼돌문제

- 아동음란물 X
  - 아동 청소년 또는 <u>아동 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</u>이 등장하여 성교 행위, 유사 성교 행위,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 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, 자위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<u>필름 비디오물 게임물 또는 컴퓨터나</u>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 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



### 아동형상리얼돌문제

#### 아동형상 리얼돌 금지 국가

영국 아동형상 리얼돌 유통 · 구매시 최대 12개월 이하 징역

캐나다 사춘기 이전 아동을 닮은 리얼돌 소지 금지

노르웨이 키 125cm이하 리얼돌 구매 금지

미국 아동형상 리얼돌 · 섹스로봇 금지하는 '크리퍼(CREEPER)법 지난해 하원 통과

호주 아동형상 리얼돌 소지 금지 법안 정부 발의

자료: 각 국가 정부 홈페이지

※ [한국일보] 아동형상 리얼돌 금지 국가 그래픽=신동준 기자





### 아동형상리얼돌문제

### 아청법 개정안(정인화의원 대표발의)

"아동신체형상성기구"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아동 (영유아를 포함)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장난감·인형 등의 물품을 말한다."



# 감사합니다!

kkim@opennet.or.kr

8kkim8@gmail.com

